

조선시대 지방양반들의 일상생활

정 진 영*

목 차

- | | |
|--------------|---------------|
| 1. 누가 양반인가 | 2) 접빈객(接賓客) |
| 2. 어디에서 살았는가 | 3) 학문과 과거 |
| 3. 어떻게 생활했나 | 4) 질병과 탕약(湯藥) |
| 1) 봉제사(奉祭祀) | |

1. 누가 양반인가

양반이란 말은 아주 폭넓고도 다양하게 쓰여 왔다. 원래는 고려시대 문반과 무반을 지칭하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양반이란 말이 지배신분층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보다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조선시대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양반이라는 용어가 법제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누가 양반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더욱이 세상은 어느 때 없이 변화하기 마련이고, 신분 역시 고정불변일 수만은 없었다. 따라서 양반의 구체적인 대상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신분적으로 양반이라는 것과는 달리 ‘이 양반, 저 양반’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던 것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에서 오늘날 양반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게 되었다.

양반을 조선시대의 신분제와 분리하여 이해할 수는 없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양반·중인·평민·천민의 4분법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편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크게는 양인과 천인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 위에 현실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특권을 장악한 양인상층(良人上層)이 양반으로서 존재하면서 양반·평민·천민이 형성되었고, 17세기에 이르러 다시 양반과 평민사이의 고급전문직종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중인층이 분화됨으로써 마침내 4개의 신분층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초기 양인층 내부에는 상당한 개방성이 있었지만, 점차 유교적인 의식과 체제가 확립되면서 신분간의 배타적인 체계가 확고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양반은 배타적이면서도 특권적인

* 동명정보대 교수, 조선시대사

존재로 고정되어 잤다.¹⁾

신분제사회에서 신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이것은 체제를 유지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거의 모든 문서에는 신분이 기재되기 마련이었다. 호적(戶籍)이니, 호폐(號牌)니 하는 국가의 공적 기록에는 물론이고, 개인간의 사문서에도 반드시 신분을 표기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여기에 양반이니 평민이니 하는 식으로 적었던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종사하는 직역(職役)을 기재하였다. 이것이 사실상 신분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었다.

양반이란 말은 사대부란 말과도 통용되었고, 또 사족(士族)이라고도 하였다. 사대부란 독서하는 선비(士)와 전현직 관료(大夫)를 일컫는다. 전현직 관료라 하더라도 선비에서 출발하였고, 또 신분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문을 단위로 결정되는 까닭에 이들을 사족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선비가 관료가 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과거를 통해서였다. 양반이 참여하는 과거에는 문·무과가 있고, 또 여기에 대·소과가 있었다. 문무의 대과 합격자를 급제(及第)라고 하고, 소과 합격자를 생원·진사, 또는 출신(出身)이라 하였다. 공신 또는 고관을 역임한 자들의 자손에게는 읍직(蔭職)이 주어지기도 하였고, 충순위(忠順衛)·충찬위(忠贊衛) 등을 두어 국가유공자의 후손을 예우하기도 하였다. 이러함에도 모든 양반이 관직이나 품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관직이나 품계를 가지지 않은 이들을 통칭해서 유학(幼學)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양반이란 크게는 유학층을 기반으로 하여 전현직 관료와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농업 등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체로 16세기 이후에는 국가에 대한 군역의 부담을 지지 않는 특권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반을 이러한 직역으로만 구분하기엔 어려울 때도 있게 된다. 가령 관직과 품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평·천민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천민층은 돈으로 관직과 품계를 살 수도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명첩(空名帖)이니 납속첩(納粟帖)이니 하는 것을 납발해서 상당수의 평·천민들에게 관직과 품계를 주었다.²⁾ 평·천민들은 나아가 유공자의 후손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충순위·충찬위 등에 투속하기도 하였고, 양반의 일반적인 호칭이던 유학을 모칭하기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유학층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유학층의 급격한 증가는 물론 기존 양반의 숫자증가에서도 오는 것이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평·천민들의 모칭 때문이었다. 하층민들은 사회적인 차별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군역을 비롯한 각종 역을 부담해야만 했고, 양반 직역의

1)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한 이해, 즉 4계층설과 양천제설은 여전히 논쟁중이다. 그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성무는 4계층설을, 한영우와 유승원은 양천제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이성무, 1995 『조선양반사회연구』 일조각.

한영우, 1977 <조선전기 사회계층과 사회이동에 관한 시론> 『동양학』 8.

유승원, 1987 『조선초기신분제연구』 을유문화사.

2) 서한교, 1990 <17.8세기 납속책의 실시와 그 성과> 『역사교육논집』 15, 역사교육학회.

취득은 하층민들이 신분적인 혹은 경제적인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³⁾

아무튼 18세기 이후에는 직역만으로는 양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몹시 어렵게 된다. 그래서 양반을 직역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판별해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혹자는 당시 대인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누가 양반인지를 가려야 하며, 이같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조(顯祖)의 존재라고 한다. 즉 직계 조상 중에 학문이나 관직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양반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 사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 양반중의 양반을 구별하고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문족(門族)·세족(世族) 또는 청문사족(淸門士族)으로 인식하고 있었다.⁵⁾

이들은 여말선초에 각지 호장총을 구성하였던 토성층(土姓層)의 후예였지만, 향리들과 스스로를 구분하면서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하고자 향안(鄉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반이라고 하여 아무나 향안에 입록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향안은 양반으로서의 신분적 하자가 있는 가문과 그 후손들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여 말하자면 명문사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향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삼향(三鄉:본향·외향·처향)에 신분적인 하자가 없어야 했다. 따라서 향안 입록자는 명실공히 그 지역사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양반이었고, 그 기준은 관직의 고하보다는 오히려 가문의 혈연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전현직 관료나 문과급제자, 생원·진사라 하여 반드시 명문양반으로 인정되었던 것도, 반대로 유학이라고 해서 하층양반으로 취급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을 성호 이익은 “영남에서는 사환(仕宦) 외에 세족(世族)이라는 것이 있어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영구히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각 지역마다 자기 기준에 의한 명문양반인 세족·문족·청문사족을 구별하기도 하였지만, 중앙집권세력 또한 그들 중심으로 양반을 구분하고 있었다. 즉, 자신들은 문벌(門閥)로 인식하면서 대부분의 지방양반들을 한문(寒門)이나 향족(鄉族)으로 낮추어 보았던 것이다.⁶⁾

18,19세기 조선왕조의 신분제는 크게 동요되고 있었다. 이같은 동요는 농업의 발전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양반 중에서도 몰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상천(常賤)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도 있게 되었다. 몰락양반은 대체로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부의 축적이 가능하였던 농민은 이를 바탕하여 신분을 상승시키기도 하였다. 농민들의 신분 상승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납속이니 공명첩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행해지기도 하였지만,

3) 정석종, 1972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신분붕괴에 대한 일고 -울산부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

이준구, 1993 『조선후기신분지역변동연구』 일조각.

4) 송준호, 1986 <남원지방을 예로 하여 본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구조와 성격> 『대구사학』 30.
———, 1987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5) 이같은 인식은 사족의 명부인 鄉案 서문에 자주 표출되고 있다.

정진영, 1990 <16·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3, 한국역사연구회.

6) 차장섭, 1994 <조선후기의 門閥> 『조선사연구』 3.

타인의 족보를 사거나, 관리들과 결탁하여 호적상에 유학으로 모칭(冒稱)하거나, 아니면 공신·종실의 후예로 자처하는 등 비합법적인 방법이 보다 일반적으로 행해졌다.⁷⁾ 이중환(李重煥)이 『택리지(擇里志)』에서 “사대부가 혹 평민이 되기도 하고, 평민이 오래되면 혹 사대부가 된다.”고 한 것이나, 다산 정약용이 유학층의 증가를 두고 “한 나라가 모두 양반이 되면 장차에는 양반이 없게 될 것이다”⁸⁾고 한 것은 바로 이같은 사정을 말한 것이었다.

아무튼 양반이란 법제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도, 조선왕조 전 시기를 두고 똑같은 의미를 가졌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양반이란 말은 그 쓰임세와 시기, 또는 지역에 따라 그 대상과 의미를 조금씩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양반이라는 신분문제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향촌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양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들에 대해 논한 것이다. 이를 바탕하여 우리는 잠정적으로 조선후기의 양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반이란 조선왕조의 지배층으로, 과거 등을 통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으며, 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향촌사회를 호령하면서 군역을 담당하지 않고,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누가 양반이나 하는 문제는 누가 양반집안인가라는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사족(蛇足)으로 붙여두기로 한다.

2. 어디에서 살았는가

조선시대의 지배 신분층인 양반은 대부분 지방출신이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지방에 살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조선사회는 외촌(外村)이 읍내(邑內)를, 지방이 중앙을 지배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조선시대 이름난 양반들이나 그 후손들의 거주지를 읍내와 서울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궁벽한 산골마을에서나 만날 수 있다. 말하자면 양반들은 지방에서 살았고, 그것도 어쩌면

7) 족보를 통한 하층민의 신분상승의 실상을 다산의 경험을 통해 잘 살필 수 있다.

정약용, 『역주 목민심서』 4, 143-4쪽. 창작과 비평사.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 귀족들의 족보를 훔쳐서 그 후손이 없는 파를 택하여 혈연이 뒷지 않는 씨족에 접속시킴으로써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바꾸니, 뜻자리를 비단자리에 이어 놓은 격이다. 혹은 공신 아무개 정승이 8대조가 된다고 칭하기도 하고, 혹은 부마(駙馬) 아무개가 9대조가 된다고 하고, 혹은 신라 경순왕의 후예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대유학자인 문성공 안유의 직계손이라고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거짓으로 왕족의 계보를 대어 혹은 효령대군이 9대조가 된다고 하고, 혹은 광평대군이 8대조가 된다고도 한다.

내가 확해도 곡산부사로 있을 때 무릇 족보를 가지고 와서 하소연하는 자를 보면 열 가운데 하나도 진짜가 없었다. 마침 <百家小譜>라는 족보를 상자 속에 넣어 온 것이 있어서 이를 가지고 대조하여 조사하니 그 간사한 것이 곧 탄로되었다. 다만 범한 자들이 너무 많아 모두 처벌할 수 없어 그 서책 만을 불태우고 죄를 추궁하지 않았다.”

8) 丁若鏞, 『與猶堂全書』 — (詩文集 雜著) <跋顧亭林生員論>.

산 넘고 물 건너 적어도 산모퉁이 몇 구비는 지나야 나타나는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왜 양반들이 이런 곳에서 살았을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와 고려의 지배신분층인 귀족들의 거주지가 거의 서울에 한정되었고, 고려시대에는 귀향(歸鄉)이 일종의 형벌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조선시대의 지배층인 양반들이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전 시기와의 큰 차이를 보여준다.

양반들이 지방에 살았다고 해서 모든 지역과 고을에 골고루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함경도나 평안도, 또는 강원도 등지보다는 하삼도(下三道)에 훨씬 많은 양반들이 거주하였고, 같은 지역에 있어서도 군현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경상도의 경우 흔히들 71개 고을 중에서 '무반7읍(無班7邑)'이라고 하여 '연해7읍(沿海7邑)'에는 사족이 없다⁹⁾고 하였고, 또 조선 전·후기를 통틀어 문과 급제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고을이 9개, 문과와 생원·진사를 합하여 10명 미만인 경우도 17개 고을이나 되었다.¹⁰⁾ 반면에 안동, 상주, 경주, 진주 등지는 이른바 양반고을로 지칭되었다. 말하자면 대읍(大邑)에 양반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지역적 또는 고을간의 차이는 물론 토지의 비척(肥瘠), 산천지세(山川地勢) 등의 자연적인 조건과 행정구역의 대소와도 관련된 것이지만, 무엇보다 토착세력의 강약과 크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토착세력이란 조선왕조 이전부터 그 지역에 토착하여 지방지배를 담당하고 있던 존재들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나말려초의 호족(豪族)의 후예며 고려시대 지방지배를 담당하던 향리의 근간인 토성이족(土姓吏族)세력을 말한다. 이들 토성이족의 일부는 대체로 고려 후기 이후 상경종사(上京從仕)함으로써 혹은 려말선초에 이르러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을 바탕하여 사족(士族)으로 신분을 상승하여 기존의 토성이족으로부터 분화하여(이들을 土姓士族이라고 한다.) 강고한 재지적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물론 중앙전출과 사족화에는 군현간, 혹은 성씨간에 시간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도 편차가 극심하였다.¹¹⁾ 이같은 편차는 결국 토착세력의 강약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또한 서북지방과 연해읍에도 물론 이러한 토착세력이 있었지만, 이들은 려말선초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몰락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토착적인 기반을 상실하였다. 선초에 이르러 새롭게 개척된 지역의 경우는 아예 이러한 토착세력이 존재할 수도 없었다. 이같은 토착세력의 존재와 강약은 곧 행정단위의 대소로 나타났고, 여기에 또 과거와 조세부담 등이 차등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이를 더욱 고착시켰다. 결국 양반의 거주지는 서북지방이나 연해

9) 『正祖丙午所懷謄錄』 162-167쪽, 서울대학교 고전총서.

10) 경상도 71개 군현 중 문과급제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경우는 연양·장기·청하·자인·하양·동래·기장·옹천·하동 등 9개 읍이고, 생원·진사를 합하여 10명 미만인 경우는 위의 9개 읍과 영일·경산·진보·청송·영양·곤양·거제·남해 등 17개 읍이다. 여기에 비해 안동(229명), 상주(208명), 경주(65명), 진주(91명) 등 대읍은 문과 급제자만도 200여 명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嶠南誌』 각 군현 <人物條> 참조)

11) 이수건, 1979 『영남사립파의 형성』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1984 『한국중세사회사』 일조각.

읍 보다는 내륙이, 중소현 보다는 대읍이 그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다.

양반 거주지에 있어서 지역적인 문제는 지역간 고을간의 차이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같은 차이는 고을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말하자면 ‘고래등 같다’는 고가가 즐비한 곳은 번화한 도시나 그 주변보다는 산이나 내를 몇 구비 돌아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한적한 지역에 있다. 이러한 곳을 향촌(鄉村)이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양반들의 전형적인 거주지는 지방하고도 향촌인 셈이다.

‘향촌’이란 크게는 ‘중앙’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행정구역상 군현의 단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 행정 관아와 각종 시설이 있고, 향리와 관속(官屬)들이 상주하는 ‘읍치(邑治)’, 또는 ‘읍내’가 아닌, 여기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곳은 대체로 행정구역상으로는 독립적인 군현을 형성하지 못하고 속현(屬縣), 향·소·부곡(鄉·所·部曲) 등으로 대읍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곳을 외촌(外村)이라고도 한다.¹²⁾

그러면 양반들이 왜 이 궁벽한 외촌에서 거주하였을까?

고려 초기 이래 지방관부의 소재지인 읍치지역은 토성이민(土姓吏民)의 집거지였고 관속들의 거주지며, 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이미 일찍부터 개발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말선초 이래 이족의 신분에서 분화하여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양반들이 읍치와 이 인근에서 그들의 기반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양반들은 여말선초 이래 吏族에서 분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읍치지역을 멀리 벗어나 아직껏 개발되지 않았던 임내(任內) 지역이나 인근 타읍의 외곽지대에 새로이 터를 잡아(이를 卜居라고 한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재지사족이 향촌지역을 적극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방의 유력계층으로 보다 용이하게 개간 허가권(立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배층으로서 하층민과 노비 등 개간에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들 지역은 수전(水田)과 이양(移秧)을 전제로 한 새로운 농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에 최적지였기 때문이다. 양반들은 이러한 기반과 조건을 이용하여 이들 지역에 농장(農莊)을 개설하고,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향촌지역은 대체로 배산임수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풍부한 계곡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비옥한 농경지의 확보는 물론이고, 하천에서는 식수와 물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산에서는 난방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고 새로운 가옥의 건립에 필요한 다양한 자재를 보다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당시의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관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관으로부터의 간섭이 적었고, 또한 한적하고 조용하여 성리학자로서의 학문적인 성향과 음풍농월(吟風弄月)로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였던 양반들의 취향에도 적합하였다. 지방

12)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서장:재지사족, 향촌, 향촌지배> 참조, 한길사.

의 양반들은 이렇듯 향촌지역에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성리학의 학문적인 기반도 심화시켜 갔다. 이들은 이러한 경제적 학문적인 기반을 통해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중앙정계를 주도하는 정치세력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들을 우리는 사림(士林) 또는 사림파(士林派)라 부른다.

양반들의 향촌개발에 힘입어 일반농민들 또한 양반들의 거주지역과 그 주위로 대거 모여들게 됨으로써 이제 산간계곡지대에도 촌락이 크게 발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촌락은 양반의 거주 여하에 따라 반촌(班村)과 민촌(民村)으로 분화되어 나갔다. 16세기의 반촌에는 양반만이 거주하였던 것도, 양반의 수가 많았던 것도, 또 동성의 양반들만이 거주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양반의 수보다는 그들 소유의 노비와 일반농민들이 더 많았고, 동성만이 아니라 여서·외손이 함께 거주하는 이성잡거촌(異姓雜居村)이었다. 이같은 촌락의 구성은 부모의 재산상속에 있어서 딸과 아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졌던 자녀균분상속제(子女均分相續制)와 남자가 신부의 집으로 장가를 드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한 당연한 결과였다. 반면에 민촌에는 거의가 평·천민인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양반의 수가 증가하면서 민촌에도 양반들의 이주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이후 부계(父系)중심의 종법적(宗法的) 가족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따라서 장자 중심의 상속제도와 친영례(親迎禮)가 일반화되면서 18세기의 반촌에는 점차 동성동본(同姓同本)의 특정성씨만이 거주하게 되었다. 이를 동성촌락이라 한다. 오늘날 명문양반가문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동성촌락을 배경하여 존재하고 있다.¹³⁾

동성촌락이란 대체로 하나의 동성동본 성씨들로 구성된 마을을 말한다. 그러면 왜 동성의 양반들이 모여서 살아야 했을까?

16세기 이후 성리학의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중국의 종법적(宗法的)인 가족질서도 점차 확립됨으로써 촌락의 구성이 비로소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편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여기에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조선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양반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빈한하여 더 이상 지배층으로서 행세 할 수 없는 처지에 다다르게 되었고, 반대로 일정한 부의 축적이 가능한 농민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반으로 행세할 수 있는 직역을 취득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빈한한 양반들은 농민 위에 더 이상 군림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욕당하기 일쑤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의 재정이 궁핍해 지면서 점차 양반들에게도 부세(賦稅)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었다. 단약한 양반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없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하층민의 도전과 관권의 간섭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이같은 현실적인 필요성은 결국 동성간의 결집을 가져왔고,

13) 정진영, 1998 『앞 책』 <제2부 제2장 조선후기 동성촌락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참조.

이것이 동성촌락의 발달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동성촌락의 양반가문은 양반으로서의 가격(家格)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실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보다 유리하였다. 그리고 족세(族勢)를 강화한다거나, 정치적 또는 학문상으로 뛰어난 조상을 가진다거나, 현실적으로 일문의 대표로 상정되는 종가(宗家)의 위세를 높이는 것 등이 가격을 높이는 최상의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18, 19세기에 이르러 가문 또는 문중단위의 다양한 조상선양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족보편찬, 문집발간, 사우(祠宇) · 서당(書堂) · 누정(樓亭) 또는 종가의 건립 등은 그 구체적인 예가 된다. 이러한 조상 선양사업은 자연히 마을간 또는 가문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세기 향촌사회에는 다양한 갈등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러한 시비의 상당 부분은 오늘날에도 온존하고 있다.

3. 어떻게 생활했나

1) 봉제사(奉祭祀)

양반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봉제사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제사에는 일반적으로 기제사(忌祭祀)와 다례(茶禮) 및 시사(時祀)가 포함된다. 기제사란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이고, 다례란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俗節祭)로서 설과 한식, 단오, 추석 뿐만 아니라 3월 3일, 4월 8일, 6월 6일, 7월 7일, 9월 9일, 등지 등에도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시사는 사철에 각기 조상의 산소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자신 또는 조상의 생일날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고, 초하루 보름에 행하는 삭망례(朔望禮), 또는 새로운 산물이 생기면 사당의 제상에 올리는 천신례(薦新禮)도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어떤 양반가문에서 4대봉사를 할 경우 1년간 행하는 제사를 통상적으로 어림잡아 계산해 보더라도 적어도 30회는 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16세기 말 오희문(吳希文)이라는 사람은 임진왜란 피난 중에서도 30여 회에 달하는 제사를 지냈다¹⁴⁾고 하니 이러한 계산과 어느 정도 합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조선시대의 제사는 참으로 번중(繁重)하여 양반들의 일상을 온통 제사에 얹매이게 하고 제수(祭需)의 비용 또한 엄청난 것이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제례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예(禮)가 강화되면서 더욱 강조되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따라서 봉제사는 일반적으로 '접빈객(接賓客)'과 함께 양반들, 나아가서는 조선왕조의 몰락을 가져오는 중요한 한 요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봉제사에 대한 생각은 상당부분 당시의 현실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14) 전경목, 1996 <日記에 나타나는 朝鮮時代 士大夫의 일상생활> 『정신문화연구』 19권 4호(통권 65호).

그것은 우선 이 빈번한 제사를 오늘날의 제사와 같은 규모와 성격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조선후기에 더욱 강조된 예가 전기의 예를 그 연장선상에서 강화해 갔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각종 제례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도리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과 제사에 드는 비용 또한 가계에 큰 부담을 줄만큼 성대하게 차리지도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를 위해 17세기 김령(金玲)의 『계암일록』(溪巖日錄)¹⁵⁾과 19세기 김인섭(金麟燮)의 『단계일기』(端磯日記)¹⁶⁾ 자료에서 구체적인 제사 시행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일기를 남긴 김령과 김인섭은 각기 안동과 단성의 대표적인 명문인 광산김씨와 상산김씨 가문의 출신이며, 문과급제와 한 때 중앙의 관직에도 종사한 바가 있다. 또한 이들이 남긴 일기는 4-50년간에 걸치는 장기간의 기록이다.

<표 1> 1629년 김령의 제사 주관 및 참여

번호	월. 일	대 상	주 관 자
1	1. 1	祠堂	兩兒
2	8	祔祭(明日)	
3	15	薦禮	兒輩
4	16	王母忌祭	
5	2. 1	朔禮	次兒
6	7	先妣忌祭	병으로 불참
7	13	廟祀	
8	15	廟祀(望禮)	兩兒
9	27	外王母忌祭	兒輩
10	3. 1	朔薦	次兒
11	3	岑廟·咸廟에 薦禮	次兒
12	13	墓所行祀	
13	15	家廟參禮	次兒
14	4. 1	薦花餅, 잠묘·합묘	次兒
15	12	曾祖妣忌祭	해당일 缺

15) 金玲(1557-1641), 『溪巖日錄』(국사편찬위원회 간, 1997).

16) 김인섭(1827-1903), 『端磯日記』(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출간예정이다).

번호	월. 일	대 상	주 관 자
16	15	望禮	해당일 缺
17	5. 1	朔禮	兒輩
18	5	祠堂禮, 咸廟祭오후	兒輩
19	7	王父祠堂時祀	
20	8	薦麥祠堂	
21	15	參禮祠堂	
22	19	王父忌祭	
23	23	質明行祀	兒輩
24	28	行祭	兒輩 및 諸君
25	6. 1	朔薦	兒輩
26	15	祠堂, 岑廟 · 咸廟奠爵	兒輩
27	7. 1	朔禮	伯兒
28	7	薦奠祠堂	伯兒
29	15	參禮, 往奠岑廟 · 咸廟	次兒 및 三兒
30	8. 1	朔禮	次兒
31	10	생일, 薦先廟	家人, 兒輩赴試
32	15	家廟參禮, 外家節祭	伯兒
33	28	質明行祀	兒輩
34	9. 1	參禮祠堂	兒輩
35	9	薦祠堂, 岑 · 咸廟行祀	室人(사당), 赴試
36	13	諱日	病未與祭
37	15	禡祭	病未能行
38	10. 1	外祖忌祭, 家廟參禮	兩兒
39	15	參禮祠堂	伯仲兩兒
40	11. 1	參禮祠堂	伯兒
41	7	동지, 祠堂, 岑 · 咸廟	伯兒
42	15	行參禮	次兒
43	20	前妣忌祭	(병으로) 伯兒行祀
44	12. 6	曾祖忌祭(岑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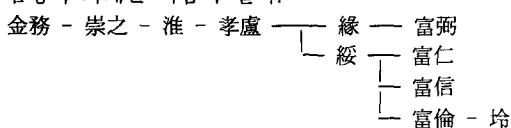
<표 2> 1876년 김인섭의 제사 주관 및 참여

번호	월. 일	대상	주관자
1	1. 1	祠堂茶禮	* 兒年始八歲攝行茶禮
2	29	伯祖考	
3	2.29	先妣	
4	3.17	曾王考	
5	7. 12	王考	
6	27	祖妣	
7	8. 15	薦新祭	
8	23	曾祖妣 권씨	
9	9. 5	亡弟	
10	10	伯母	
11	10월중	墓祭	
12	11. 14	曾祖妣 김씨	
13	12. 17	伯祖妣	

위 <표 1, 2>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사실은 17세기와 19세기의 제사횟수에 있어서 큰 차이이다.

앞에서 논 중 통상적인 제사 횟수가 30여 회 이상이었을 것임과 또 실제 오희문이 30여 회에 가까운 제사를 지내고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추산에 불과한 것이거나 임진왜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도 혼자서 피난하던 기간의 사정이라는 점에서 당시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위 <표 1>에서 무려 40여 회가 넘는 제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제사를 김령이 주관한 것은 아니었다. ‘잠묘(岑廟)’ ‘함묘(咸廟)’라는 기록은 선대의 산소가 있는 방밤(芳岑)과 함창(咸昌)에 있는 재실(齋室)에서 거행되는 제사에 참석하였음을 의미한다. 김령이 적장자였다면 이 모든 제사는 당연히 그의 주관하에 치러졌을 것이다.¹⁷⁾ 아무튼 3-40회에 이르는 제사횟수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16, 17세기 양반가문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17) 김령의 가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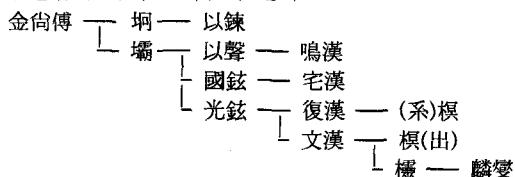


그러나 <표 2>에서 보듯이 19세기에 이르러서 제사는 회수 상으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줄어든 구체적인 내용은 명절제사와 죽망례가 대부분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가문의 차이라기 보다는 시대적인 차이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제사가 더욱 번중해 졌을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더욱이 <표 1, 2>에서 공히 고조(高祖)와 고조비(高祖妣)의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말하자면 3대봉사를 하였다는 말이 된다. 4대봉사가 일반화된 것이 17세기 중반 이후였으니, 김령의 3대봉사는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인섭이 살았던 19세기에는 4대봉사가 일반적이었다. 물론 김인섭이 증조대에서 갈렸으므로 고조의 제사는 말하자면 큰집에서 주관했을 것이니 사실 3대봉사만 행해졌다고 할 수는 없다.¹⁸⁾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부모(伯父母)의 제사에는 거의 참여하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있는 것에 반해 고조와 고조비의 제사에 참여하였던 기록은 없다. 이것은 아마 가계상의 위치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조선후기의 양반가에서 4대봉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자의 경우였을 것이고, 지손(支孫)의 제사참여는 여기에 준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제사에 참석한 인원수가 극히 적었던 것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제례에서 4대봉사를 기본으로 하였던 것은 17세기 초반 경부터라고 한다. 이전에는 3대봉사를 관행으로 하였다. 즉, 예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일반화되었던 것이다.¹⁹⁾ 조선후기 주자가례의 일반화는 3대에서 4대봉사로 제사를 강화한 반면에 속절제사를 대거 폐지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말하자면 예의 강화란 주자가례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 자체가 제사를 더욱 번잡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설명이 된다. 아무튼 조선후기 예론(禮論)의 심화 속에서도 제사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비슷한 시기의 다른 일기에서도 확인된다.²⁰⁾

<표 2>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제사의 참여범위가 직계조상과 백부모에 한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제들도 일기 어디에도 여타의 제사에 참여한 기록이 없다. 이것은 반대로 김령이 주관하는 선대의 제사에도 참여자의 범위는 극히 한정되었을 것임을 의미한다. 김령의 『계암일록』에서 확인되는 제사 참석자는 대체로 10인 미만이었다. 제사

18) 김인섭의 가계는 다음과 같다.



19) 이순구, 1998 <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한국사』 31권, 국사편찬위원회.

20) 具尙德(1706-1761), 『勝聰明錄』(정신문화연구원 간, 1995).

여기서도 俗節祭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에의 참석을 권유하는 것을 “청객(請客)”으로 표현하고 있다.²¹⁾ 이것은 제사의 참석자가 대부분 직계 자손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같은 현상은 아마 누구 없이 제사가 빈번하였으므로 일일이 남의 집의 제사까지 참석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조선시대의 기제사 등의 제사에 수십 명 이상의 제관이 모여서 성대하게 치루어 졌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위 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사의 주관자가 ‘백아(伯兒)’·‘차아(次兒)’ 등 제주의 아들들이거나, 또는 가인(家人)·실인(室人)으로 표현되는 제주의 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주관하는 제사는 명절제와 삭망례였다. 간혹 제주(祭主)가 병으로 제사를 주관할 수 없을 때에는 기제도 이들이 주관하였지만, 대부분 명절제와 삭망례는 ‘伯兒行家廟參禮’·‘次兒行薦禮于家廟’ 등으로 표현되듯이 혹은 백아가, 혹은 차아가 혼자서 주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인섭의 일기에서는 정조(正朝)의 다례를 갖 8세되는 아들에게 ‘선행(攝行)”시키고 있음도 주목된다.²²⁾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제사도 집안에 출산이 있다던가, 질병이 있으면 궐행(闕行)하거나 지방이나 신주만 모시는 ‘권설(權設)’이 행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은 물론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조선시대의 제사는 빈번하였고,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것이다. 그것도 전기보다는 후기에 이르러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제사가 번증하였다기 보다는 양반들에게 생활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다. 제사 곧 조상숭배의 생활화는 새로운 산물이 생기거나 면길을 떠나기 전후에 사당에 배알하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폐단으로 지적되는 제사의 형식화와 허례화도 역시 조선후기부터 시작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사가 효(孝)의 실천으로서 조상숭배라는 차원을 넘어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 즉 가문의 우열을 구별하는 수단이 될 때, 제사는 불가피하게 형식화 격식화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세기 이후 항촌사회에서는 가문을 단위로 하는 다양한 시비와 대립이 있었는데, 이것은 곧 누가 더 큰 양반이라는 문제와 직결되고 있었다. 봉제사의 규모와 범절도 더 큰 양반으로 치부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2) 접빈객(接賓客)

‘접빈객’은 봉제사와 함께 양반들의 일상생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양반들의 일기를 볼 때 빈객의 방문이 거의 매일 기록되어 있다. 찾아오는 손님을 홀대한다는 것은 양반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식되었고, 이것은 또한 자신을 양반

21) 『溪巖日錄』 년 6월 22일(44쪽).

“質明行事祀 宗家時祀亦是日故 不得請客 尚州兄判事兄佳麻公來 設餽禮”.

22) 『端礪日記』 1866년 1월 1일조.

들의 사회로부터 스스로 소외시켜가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빈객들은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방문하는지, 나아가서는 이것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 를 보기로 한다.

빈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친인척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문, 과거, 관직 등 다양한 사회생활의 여러 과정에서 교유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이들만은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면식이 없는 단순한 여행객들도 종종 찾아들고 있었다. 또 거주 지역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먼 거리의 타방출신들도 종종 찾아들고 있다. 이러한 빈객의 범위와 규모는 가문의 위세와 학문의 고하, 경제적인 여력, 과거와 관직의 유무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임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빈객의 방문 목적은 친인척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소사와 관련된 것이거나 단순한 안부 확인차 들르는 경우도 많았다. 원방(遠方)의 내왕객은 특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단순한 질손인 경우도 많았다. 당시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교통로에는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양반들은 이러한 시설을 불가피할 경우에만 이용할 뿐 대체로 혈연과 학연, 또는 사회적 교유관계를 바탕하여 인근 양반가를 찾아들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대부분 숙식이 제공되었고, 일부의 경우에는 노자를 부조하거나, 말과 하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일기에서는 빈객들과의 혈연적 사회적 관계를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선의 양반사회는 혈연, 학연, 과거와 관직 등으로 상호 거미줄처럼 얹히고 설키어 있었음을 보게 된다. 양반이 아닌가, 혹은 어떠한 위치의 양반이기는 이같은 연망(聯網)에서 어떠한 위치에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로 헤아려 볼 수 있다.

특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그 내용이 다양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말하자면 ‘글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었다. 이러한 글에는 문집과 족보 등의 서(序)·跋文(跋文)이라던가, 서원·재실 등의 기문(記文)·상량문(上梁文), 또는 청원서·축하문 등등에까지 이른다. 이런 글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문집에서 종종 보이는 ‘대작(代作)’이라고 부기(附記)된 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선시대 ‘대작’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을 위해 대작해 주는 본인도 간혹 자제들에게 ‘대작’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초안한 글을 대필시키기도 하였다. 대필에는 사적인 편지에 있어서도 행해지고 있었다. 단계 김인섭의 일기에서는 스승으로 높이 추앙하고 있던 안동의 유치명(定齋柳致明)과 중앙의 정승으로 있던 정원용(鄭元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일족 중의 글 잘 쓰는 이를 불러서 대필시키고 있다.²³⁾ 당시의 편지에는 보내는 이를 밝히는 자, 호, 이름이라든가 수결(手決)이 첨부된다. 이러한 사정에서 오늘날 선현필첩(先賢筆帖)으로 전해지는 다수의 글들은 사실 이름을 남긴 이의 글씨가 아닐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첩빈객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은 단순히 이를 통해 양반 상호간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거

23) 『端礪日記』 1860년 3월 및, 1865년 정월 일.

나, 또는 예를 실천한다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면 접빈객의 사회적인 기능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부차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정보의 취득과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양반들에게도 현실의 다양한 정보는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하였다. 정보의 취득은 공식적으로는 관보(官報)나 저보(邸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편지나 방문객들을 통해서 행해진다. 편지는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것은 먼 곳만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마을 친지 사이에도 수수된다. 명문가문에서는 편지의 전달이나 크고 작은 문제를 전담하는 종(奴)이 한 두 명 정도 있게 마련이다. 이들은 거의 매일 상전인 주인을 대신하여 이곳 저곳, 혹은 이런 저런 일들로 쏴다니고 있다. 서울의 상황도 사가(查家)의 안부도 이들이 전해주는 편지를 통해 알게 된다. 물론 편지는 이들에 의해서만 수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바로 방문객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였다. 가령 서울을 오가는 경우 서울이나 여타의 목적지, 또는 경유지의 여러 사람들에게 전할 편지를 휴대하고 길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그곳에 들러 숙식을 제공받고 담화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빈번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상도 지역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서울의 소식이 10일 정도만에 전달되고 있었다. 궁벽한 산골에 머무르고 있지만, 서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고, 반대로 그들의 존재를 중앙정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반들은 비록 향촌에 은거하고 있더라도 소외되지 않았고, 또 천망(薦望)에 올라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접빈객은 단순히 손님의 접대만이 아니라 이것은 곧 예의 실천이었고,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까지도 행해지고 있었다.

3) 학문과 과거

양반 자제는 7-8세 정도부터 천자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한다. 좀 자라면서 주로 문중단위로 설립된 서당에서 수학하거나 인근에서 학문이 높은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기도 한다. 이 때의 과목은 사서삼경을 기본으로 하는데, 배운 바를 철저히 암송하게 된다. 그리고 15세 정도가 되면서 고을 또는 감영(監營)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과거에 응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반들의 대부분은 한적한 사찰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부와 생활에 필요한 양식과 반찬, 그리고 지필묵 등은 본가에서 수시로 보내고 있었다. 특히 과거를 앞두고 서는 수십 명의 유생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을 거접(居接)이

라고 하였다. 거점의 기간은 보통 10여일 전후였고, 모임의 장소는 서원이나 향교가 아닌 사찰이 대부분이었다.²⁴⁾ 조선시대 사찰은 각지의 양반가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승려들은 인근 양반가를 수시로 내왕하고 있었고, 또 양반가에서는 불공이나 사찰 건립을 위한 시주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과거는 양반들의 신분 유지나 출세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할 과제였다. 양반들이 참여하는 과거는 문과와 무과였고, 여기에는 대과와 소과가 있는데, 감시(監試) 또는 향시(鄉試)라고 하는 소과의 예비시험인 초시에는 지역별로 철저히 취재인원(取才人員)이 배당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요즈음 거론되고 있는 인재활당제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소과의 합격자인 생원과 진사는 다시 성균관에 입학하여 대과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반들은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돋구어 하고, 이 관계는 일생동안 지속되었고, 또 대를 이어 계승되기도 하였다. 즉, 생원 진사들은 고을단위로 사마소(司馬所) 또는 사마계(司馬契)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성균관의 반인(泮人)으로 생활하면서 다른 지방 출신의 선비들과 교유하였으며, 특히 대과에 같은 해에 급제하여서는 ‘동방(同榜)’이라 하여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물론 이러한 여러 단계마다에는 공적 또는 사적으로 명부가 작성되었는데, 사마방목(司馬榜目), 문과방목(文科榜目), 사마계안(司馬契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대관계는 양반들의 관직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혈연관계와 함께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었다. 양반사회를 이해하는데 이같은 인간관계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과거의 합격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고, 따라서 상당수 선비들은 평생을 과거준비에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우리가 문집을 남긴 많은 사람들의 행장(行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다는 구절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과는 다르다. 엄청나게 많은 정열과 노력을 경주했지만,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문화급제는 곧 관직에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사실 그렇게 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있어서 관직생활이 곧 풍요한 생활을 의미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중앙의 내직에 임명되는 초기의 벼슬생활에서 서울에 아무런 연고를 가지지 못하고, 또 그들 근거지인 향촌에 넉넉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던 대부분의 시골 선비들은 궁핍함 조차 모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더욱이 19세기에 들어와 정치 경제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분화가 더욱 심화되고, 노론 또는 쳇족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지방출신 관리들은 한직으로 계속 떠돌 뿐이었다. 이들은 결국 관직생활을 청산하고 향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관직을 영원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더 절박한 경제적인 궁핍을 모면하기 위해, 또는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관직에 다시 진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²⁵⁾

24) 정진영, 1994 <조선후기 養士齋의 성격 -수령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17권 제4호(통권57호).

문과급제자나 재차 출사(出仕)를 희망하였던 사람들이 관직에 나아가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은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 수 개월 또는 몇 년씩 서울에 머물면서 구직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19세기 중후반에 사간원 정언, 현납 등을 역임했던 김인섭의 경우는 일생동안 7-8차에 걸쳐 길게는 1년 짧게는 한 두달씩 상경과 귀향, 또는 출사와 사직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서울생활 대부분은 아버지와 함께 하였다. 이때 김인섭의 아버지는 거의 매일 어디론가 출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름아닌 아들의 입신출세(立身出世)을 위한 활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주위에서는 척족의 실력자를 만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²⁵⁾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조상의 기제(忌祭)와 명절제사 등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사정은 김인섭의 경우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인섭의 거경일기(居京日記)에 등장하는 많은 지방선비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다 하더라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반들의 일상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독서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그 편차는 다양하였겠지만, 앞에서 든 김인섭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독서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서울생활에서 더욱 그러하였고, 여행 중일 때도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을 구해서 탐독하고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한 날은 특별히 ‘절과(闕課)’라고 쓰고 있다. 이들이 읽고 있던 책들은 사서삼경을 위주로 개인문집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서, 혹은 농서, 의서 등 실로 다양하였다. 이들 책들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빌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독서와 함께 시를 짓는 것도 양반으로서의 중요한 일상이었다. 몇 명이 모여서 시회(詩會)를 하거나, 시를 지어 특별히 화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지식인 또는 학자로서의 양반의 일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질병과 탕약(湯藥)

양반들의 생활일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기록되는 것이 병과 탕약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전염병들은 사전에 예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사소한 병이라도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천연두 등의 전염병 등에는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누구나 이같은 질병과 전염병에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병에 대한 치료는 어떠했을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탕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탕약의 제조는 약국이나 의원을 불러서 진맥을 하여 제조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양반들이 탕약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약국은 읍내

25) 이같은 사정은 『端礪日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端礪日記』.

와 몇 개의 마을마다 하나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원 또한 그러하였다. 의원은 전업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전업적인 의원은 아니지만 진액과 병에 대해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도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탕약에 필요한 약재로 기본적인 것들은 상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삼이나 꿀, 또는 구하기 어렵거나 값비싼 약재들은 늘 구비할 수 없었다. 이러한 약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일기에서 자주 보게 된다.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치료제로서의 탕약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영양가 높은 음식물의 복용이다. 이를 보신이라 하자. 이것은 영양가 높은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말하자면 간접적인 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딱 들어맞는 치료제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신은 병을 이겨내게 하는 간접적인 치료제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같은 보신제로는 닭, 개, 또는 돼지고기 등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도 개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고기의 섭취가 평상시에는 거의 불가능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고기는 오늘날 일부에서 혐오식품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개고기로부터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힘든 노동을 감당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음식의 차원을 넘어 질병의 간접적인 치료제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전염병이었다. 당시 대표적인 전염병으로는 두역(痘瘡)으로 알려진 마마였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방법은 없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같은 전염병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환자나 자신을 격리시키는 일뿐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하층민들에게 적용되었던 것 같고, 후자는 피병(避病)이라 하여 아직 병이 전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피신하는 것으로 주로 양반의 대응방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피병은 거주지역에서 병이 물러갈 때까지 계속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 개월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피병은 당시에 일상화된 것이었다. 가족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여러 곳으로 나누어 가기도 하였고, 피병처로는 인근의 사찰이나 인척가 또는 노비가가 주된 대상이 되었으나, 곳곳에서 창궐하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마을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병지로 선택된 마을의 배척을 받기도 하였으나 양반의 위세로서 무마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피병하고 있는 마을에 전병병이 번지면 또 다시 옮기지 않을 수 없었고, 피병할 수 없는 노인이 있을 경우에는 간호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피병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으므로 죽음의 화를 모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죽은 이를 장사 지낸다는 것은 처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전염병이 특정한 신분에만 문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탕약의 사용이나 피병 등으로 여기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양반들보다는 이같은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하층민에게는 더욱 큰 고통이고 치명적이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질병

과 전염병은 경제적 빈곤, 관리들의 가렴주구 등과 함께 하층민에게 이중·삼중의 질곡으로 작용하였음이 틀림없다.

질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양반들이 하층민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한 개인 또는 역사 일반의 이해에 있어서 질병이나 전염병 같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전근대사회에서 질병이 한 개인의 정치·사회적인 활동에, 또는 전염병이 당시의 인구문제에 끼쳤을 심각한 영향을 더 이상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 보다 겸손해 질 수 있을 것이다.